



제439 회국회(정기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공의 정원 결정 시 의사편재지표 고려〉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2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4. 14.
- (3) 회 부 일 : 2026. 4.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및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7조).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전문의) ① ~ ③ (생략)	제77조(전문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련을 받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과목별 정원을 의료기관, 대학 등 수련 실시 기관별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의 정원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u>
<u>④ 전문의</u>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⑤ 그 밖에 전문의</u> ----- -----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문과목별·수련 실시 기관별 정원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가 공포되기 전까지 전문과목별·수련 실시 기관별 정원 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일정한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공의의 정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공의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공의 배정 기준이나 정원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²⁾

1)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총규모가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수련병원(기관)별 환자진료실적, 수련환경평가결과, 정원책정지도전문의(전문과목별 레지던트), 전공의 확보율, 지침상 병원(기관)·과목별 배정상한선, 전문과목학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설명함.³⁾

□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사편재지표’는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 공급의 불균형 해소 및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 공급의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련기관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전문과목별 수급상황을 반영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전공의의 정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보건복지부지침)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이른바 ‘기피 전문분야’의 전공의 정원 확대가 곧바로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음.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⁴⁾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으며,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낸 바 있음.⁵⁾

<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지역별·과목별) >

(단위 : 명, %)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모집 인원* (A)	선발 인원 (B)	비율 (B/A)	모집 인원* (A)	선발 인원 (B)	비율 (B/A)	모집 인원* (A)	선발 인원 (B)	비율 (B/A)
총계	13,498	7,984	59.1	8,025	5,058	63.0	5,473	2,926	53.5
인턴	3,006	1,564	52.0	1,694	963	56.8	1,312	601	45.8
레지던트	10,492	6,420	61.2	6,331	4,095	64.7	4,161	2,325	55.9
가정의학과	687	166	24.2	431	133	30.9	256	33	12.9
결핵과	1	-	-	1	-	-	-	-	-
내과	1,752	1,137	64.9	1,051	797	75.8	701	340	48.5
마취통증의학과	740	671	90.7	447	411	91.9	293	260	88.7
방사선종양학과	83	30	36.1	59	27	45.8	24	3	12.5
병리과	190	34	17.9	110	25	22.7	80	9	11.3
비뇨의학과	174	114	65.5	104	68	65.4	70	46	65.7
산부인과	620	299	48.2	417	243	58.3	203	56	27.6
성형외과	217	194	89.4	132	123	93.2	85	71	83.5
소아청소년과	770	103	13.4	481	80	16.6	289	23	8.0
신경과	348	226	64.9	193	135	69.9	155	91	58.7
신경외과	333	256	76.9	185	147	79.5	148	109	73.6
심장혈관흉부외과	210	46	21.9	128	42	32.8	82	4	4.9
안과	357	328	91.9	210	194	92.4	147	134	91.2
영상의학과	446	408	91.5	260	232	89.2	186	176	94.6
예방의학과	50	-	-	31	-	-	19	-	-
외과	554	204	36.8	349	156	44.7	205	48	23.4
응급의학과	656	276	42.1	379	161	42.5	277	115	41.5
이비인후과	360	310	86.1	213	184	86.4	147	126	85.7
재활의학과	381	341	89.5	226	205	90.7	155	136	87.7
정신건강의학과	417	390	93.5	244	225	92.2	173	165	95.4
정형외과	610	532	87.2	375	311	82.9	235	221	94.0
직업환경의학과	103	69	67.0	34	18	52.9	69	51	73.9
진단검사의학과	113	49	43.4	76	30	39.5	37	19	51.4
피부과	257	231	89.9	161	143	88.8	96	88	91.7
핵의학과	63	6	9.5	34	5	14.7	29	1	3.4

* 결원(정원-현원) 범위에서 각 수련병원(기관)이 모집계획을 제출한 인원

4)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5) 2025년도 하반기의 경우 의정갈등으로 인한 사직 전공의 복귀와 맞물리면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환경이었으나, 지역별·전문과목별 선호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

□ 둘째,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교육생임. 그런데 지역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공의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전공의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를 위한 목적의 경우 해당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동일한 전문과목에서 종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반면, 지역별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경우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전문의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련과정 중에 있는’ 전공의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로 보임. 그런데 전공의의 경우 이중적 지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처우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정원 배정에 지역별 공급 불균형을 지표로 삼을 경우 전공의를 지역의료 공백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⁶⁾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전공의 배치는 인력수급이 아닌 양질의 교육이라는 가치 하에 설계되어야 하며, 복잡한 의료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의사편재지표의 현실적 한계 등이 우려됨.

3) 대한한 의사협회 (수정)

- 의료인의 효율적 배치는 (양방)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한의사, 치과의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한병원협회 (반대)

- 전공의 정원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교육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며, 의사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수급 조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
 - 기관별 전공의 정원은 수련병원의 교육역량, 지도전문의 수, 환자 수 및 진료량, 임상사례 다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수련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은 조치는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만을 고려하게 될 우려가 있음.

6)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에 대하여는 ‘신중검토’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4